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2026. 6.

비상기획관

제3차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

☐ 간주처리 내역 및 사유

○ 제3차 : 1건, 500천원

- 민방위교육훈련-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500천원) : 행정안전부의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간주처리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1172호(2026.3.18.)

○ 간주처리 세부 내역

- 세입예산

(단위:천원)

세입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511-01 (국고보조금)	2,500	500	3,000

- 세출예산

(단위:천원)

예산과목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소 계				(×2,500) 2,500	(×500) 500	(×3,000) 3,000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 능력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행사운영비 (201-03)	(×1,700) 1,700	(×500) 500	(×2,200) 2,200
			행사실비지원금 (301-11)	(×800) 800	(×0) 0	(×800) 800

붙임 : 간주처리 근거 서류(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 제3차 간주처리 근거 서류

-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행정안전부 민방위과-1172호, 2026.3.18.)

붙임 : 교부결정 통지 공문 각 1부



행정안전부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 관련근거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제19조(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통지)
- 나. 민방위과-4897호(2025.12.18., "2026년 제51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 내역 통보")

2.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교부결정 통지합니다.

- 붙임 1.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부,
2.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1부,
3.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민방위담당관), 부산광역시(안전정책과), 대구광역시(사회재난과), 인천광역시(비상대책과), 광주광역시(안전정책과), 대전광역시(사회재난과), 울산광역시(안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안전정책과), 경기도지사(비상기획담당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비상기획과), 충청북도지사(안전정책과), 충청남도지사(안전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안전정책과), 전라남도지사(안전정책과), 경상북도지사(위기관리대응센터장), 경상남도지사(안전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회재난과)

주무관 과 학 기 술 서 민방위과장 권현수
전유다 기관 이만열

참조자

시행 민방위과-1172 (2026. 3. 18.) 접수 민방위담당관-4574 (2026. 3. 18.)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42 (어진동) / <http://www.moi.go.kr>

전화 044-206-4387 /전송 044-2068908 / yurg0341@mail.go.kr / 대국민 공개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시도지사(보조사업자)】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에 따라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보조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 사업명 :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나. 내역 사업명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다.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 등 17개 시·도지사

라. 교부목적 : 2026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

마.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 사업규모

[단위 : 천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	총사업비	국비
계	90,000	90,000

3) 보 조 율 : 100%

바. 예산과목 : 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11	020	025	2600	2634	304	330-01
일반	공공 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안전정책	비상시 대비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교부 요청액	교부액 (예정액, 3월 중)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	90,000	90,000	90,000

※ 자치단체별 국고보조 내역 붙임 참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및 다음 사업의 보조금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교부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사업의 추진, 보조사업 제한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 등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 등에 의한 행정안전부 (이하 '우리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재산처분과 같이 우리부의 사전 승인 등 필요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된 경우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마.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부의 승인 없이 교부금을 이월한 경우(차년도 예산 우선순위 배제 및 삭감 등)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 사업은 사업 특성상 이월 불가

바. 보조사업의 종료에 따른 정산 및 반납(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이 지연*된 경우

* 반납금은 사업 종료 익년도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미반납 사유에 따라 다음 사업의 지원 가능 예산에서 최대 50%까지 감하여 지급

사. 우리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처분 등을 시행한 경우

아.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사항]

- 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 다. 보조금은 사업 목적인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마.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바. 행정안전부(이하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가.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조사업자는 우리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안 및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바.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교부 결정사항을 우리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 변경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업의 보조금 감액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다.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 될 경우,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라.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1)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마.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 관련 사항을 사전에 우리부에 보고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 사업은 사업 특성 상 이월 불가
- 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1)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2)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그 현황(재산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 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의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구 분	계(천원)	국고보조(천원)	지방비(천원)
계	90,000	90,000	-
서울특별시	3,000	3,000	-
부산광역시	3,000	3,000	-
대구광역시	3,000	3,000	-
인천광역시	3,000	3,000	-
광주광역시	3,000	3,000	-
대전광역시	3,000	3,000	-
울산광역시	3,000	3,000	-
세종특별자치시	3,000	3,000	-
경기도	3,000	3,000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공동주관)	42,000	42,000	-
충청북도	3,000	3,000	-
충청남도	3,000	3,000	-
전북특별자치도	3,000	3,000	-
전라남도	3,000	3,000	-
경상북도	3,000	3,000	-
경상남도	3,000	3,000	-
제주특별자치도	3,000	3,000	-